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6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9. 01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9. 0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9. 13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기결

2. 폐지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(死文化) 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고성군 마스코트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
- 고룡이 상표권 사용기한 만료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2조)

-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청산에 따라 조례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성군 마스코트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,

「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1172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7. 10. ~ 2023. 7. 31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행정 현실에 맞지 않아 집행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「고성군 마스크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 등 2건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,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원안가결